

# 굴착 공사 신고 안내문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전화 **1644-0001**로 반드시 **굴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 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동법제30조의 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 도시가스배관 매설유무를 확인, 굴착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하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 법령 위반 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 신고 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 ○ 신고제외 대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 ◆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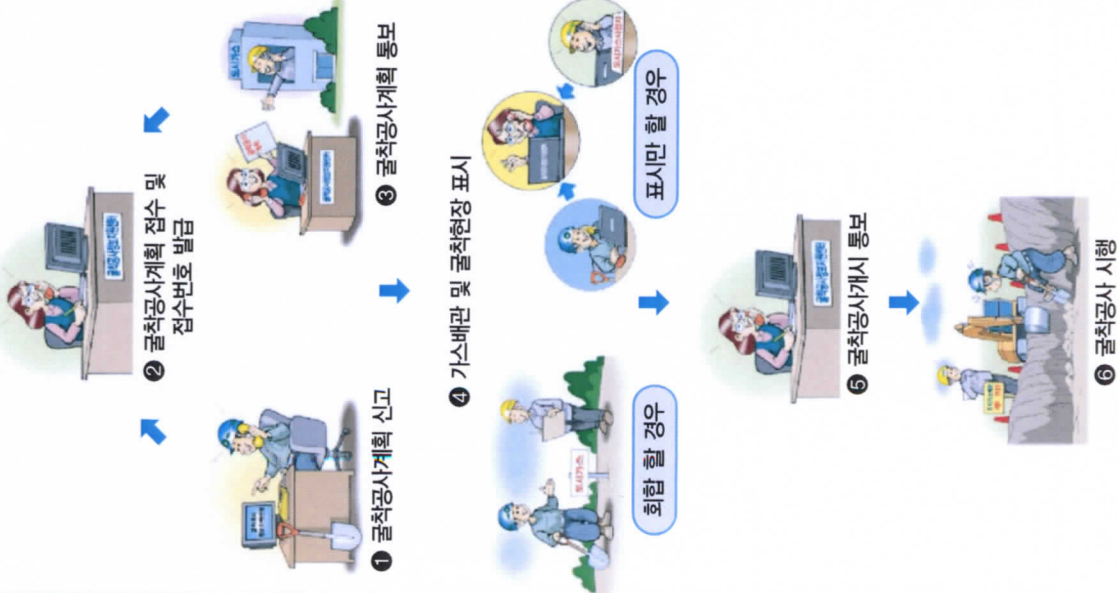
## □ 신고 방법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홈페이지 [www.eocs.or.kr](http://www.eocs.or.kr)
- ◆ 모바일 [m.eocs.or.kr](http://m.eocs.or.kr)
- ◆ 전화 1644-0001

## 굴착공사 신청 및 이용절차

모든 통보와 신고 등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화와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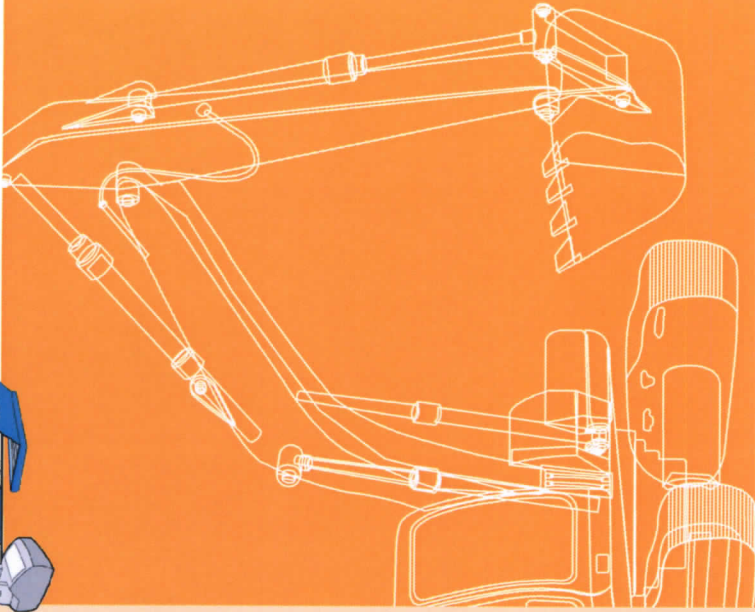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www.eoccs.or.kr · m.eoccs.or.kr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전화 : 1644-0001 팩스 : 031-313-3116

굴착신고의 편의와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굴착공사 신고는  
**1644-0001**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 계 법 령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 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 법 령 위반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유무를 확인, 굴착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개시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깊이가 100m 이상인 경우.
2. 최고사용인력이 중앙 이상인 배관이 10m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굴착공사 신고는 1644-0001

## 1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 ○ 신고 제외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직탐에 의한 굴착공사

## 2 신고 방법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홈페이지 [www.eocs.or.kr](http://www.eocs.or.kr)
- ◎ 모바일 [m.eocs.or.kr](http://m.eocs.or.kr)
- ◎ 전화 1644-0001

## 3 신고 내용

굴착공사 발주시명, 굴착공사 회사명, 굴착공사 담당자명, 굴착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굴착공사 위치(주소), 굴착공사의 종류, 굴착공사 예정일자

## 4 위치 확인방법 결정

굴착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현장 위치 및 매설된 가스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EOCs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5 배관 표시 방법

### ○ 만나서 표시하기로 한 경우(회합)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굴착공사 예정 지역에는 흰색 페인트, 매설된 가스배관 직상부에는 황색 페인트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 굴착공사자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된 배관의 위치표시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

### 도시가스사업자

### ○ 만나지 않고 표시하기로 한 경우(표시)

굴착공사 예정지역을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

### 굴착공사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부터 공사 위치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배관 직상부에 황색 표시를 하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도시가스사업자

## 6 굴착공사의 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 현장 및 매설배관에 대한 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굴착하여도 좋다" 라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가능 여부를 통보 받은 후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www.eocs.or.kr](http://www.eocs.or.kr) m.eocs.or.kr Tel: 1644-0001

굴착공사 신고는

1644-0001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www.eocs.or.kr](http://www.eocs.or.kr) · [m.eocs.or.kr](http://m.eocs.or.kr)

Tel : 1644-0001